

한진칼 이사회 규정

제정 2013년 8월 1일

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구성, 기능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한 것 이외의 중요사항을 결의하고 각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.
- ② 이사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감독한다.

제 4 조 (구성)

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 5 조 (의장)

- ① 이사회회의 의장은 이사회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 중 1명을 선임한다.
- ② 의장의 임기는 해당 이사 임기 만료시 까지로 한다.
- ③ 이사회회의 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등 의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 중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6 조 (회의 구분 및 개최주기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한다.
- ③ 필요 시 의장은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7 조 (소집권자)

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한다.

제 8 조 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그 소집목적에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늦어도 회의 1일 전에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.

제 9 조 (부의사항)

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주주총회의 소집
- 영업보고서의 승인
- 재무제표의 승인 (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 및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어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)
- 정관의 변경
- 현금·주식·현물배당 결정 (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 및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어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)
- 이사의 업무 감독권
-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- 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이사의 보수 (단, 이사회내 보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경우 보상위원회에 그 의결 권한을 위임한다)
- 주식의 소각
-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2. 경영에 관한 사항

-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, 준법통제기준의 제·개정 및 폐지 등
- 지점의 설치·이전·폐지
-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-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- 회사 및 자회사의 중장기 전략계획 승인
- 자회사 브랜드 사용 계약 체결 및 변경
- 최근 사업연도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2.5 이상의 신규 시설 등 투자 및 지출
- 최근 사업연도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2.5 이상의 구매 업체 변경 및 신규업체 선정
- 최근 사업연도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2.5 이상의 타법인 출자 · 소유주식 매각
- 최근 사업연도 말 연결기준 자산총액의 100분의 2.5 이상의 유·무형 자산 취득 및 매각계획 처분 결정
-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대규모내부거래
- 대외공시에 필요한 이사회 결의사항

3. 재무에 관한 사항

- 신주 및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
- 양도제한주식의 양도 승인
- 준비금의 자본전입
- 전환사채의 발행
-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신주인수권의 양도성 결정
- 주식 유·무상 증자
- 자기주식의 취득·처분·소각
- 최근 사업연도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2.5 이상의 차입(CP, 당좌차월, Credit Line 등) 계약
- 최근 사업연도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2.5 이상의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
- 기말 회계결산 보고
-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중요 정책 변경

4. 이사 등에 관한 사항

-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
-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
- 이사에 대한 경업의 승인
- 이사회 소집권자의 지정

② 기타 법령, 정관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

③ 이사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

④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 의사결정

⑤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10 조 (결의방법)

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397조의2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) 및 제398조(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
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,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사는 결의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10 조의 1 (보고사항)

- ①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- ②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
- ③ 분기·반기 회계결산 보고
- ④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
- ⑤ 회사 비재무 리스크(ESG)의 검토결과 보고
- ⑥ 기타 회사경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

제 11 조 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 - 경영위원회
 - 감사위원회
 -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
 - 내부거래위원회
 - ESG경영위원회
 - 보상위원회
 -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위원회
- ② 각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-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.
-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다.

제 12 조 (위임)

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(단, 1.9 부의사항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동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)

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
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
제 13 조 (관계인의 의견 청취)

- ①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사외이사는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제 14 조 (의사록)

- ①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15 조 (이사회 평가)

이사회는 이사회 투명성 및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[부칙]

1. 본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2019년 5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3. 본 규정은 2019년 8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4. 본 규정은 2019년 11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5. 본 규정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6. 본 규정은 2020년 2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7. 본 규정은 2021년 4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8. 본 규정은 2022년 11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9. 본 규정은 2024년 11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10. 본 규정은 2025년 2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